

부천시보육위원회설치운영과시립보육시설설치및

위탁운영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

| | |
|-------|----------------------|
| 의안번호 | 제483호 |
| 의결년월일 | 제90회 (2001. 9. 8) |

제출년월일 : 2001. 5. 14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2001년 4월 26일 시의회로부터 이송되어 온 부천시보육위원회설치운영과시립보육시설설치및위탁 운영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로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의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를 요구합니다.

□ 이 유

- 보육위원회의 기능은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3조제3항에 의한 영유아보육사업의 기본방향 및 정책, 부천시 보육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보육시설 입소대상 연령의 연장에 관한 사항, 보육시설에서의 비용수납에 관한 사항, 기타 영유아보육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로서 실질적 수혜자인 보호자의 의견이 개진되어야 하나 동 위원회에 보호자대표가 제외됨은 영유아보육법 제4조에 위배됨
-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4조에서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만 규정하면서 연임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으므로 하위법인 조례에서 연임규정을 두는 것은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4조에 위배됨

□ 첨 부

- 부천시보육위원회설치운영과시립보육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 관계법령 발췌서

- 영유아보육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4조

□ 기타 참고사항

- 해당 없음

부천시보육위원회설치및운영과시립보육시설설치및

위탁운영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부천시보육위원회설치운영과시립보육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하되, 유아교육전문가 3인, 보육시설장대표 2인, 보육시설교사 2인, 해당상임위원회 시의원 3인, 시민단체 3인, 관계공무원 등으로 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 내지 제7조를 제5조 내지 제8조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하되, 복지 및 유아교육전문가, 보육시설종사자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다만, 복지 및 유아교육전문가, 보육시설종사자 대표, 보호자 대표 중 3인은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구성한다. | 제3조(위원회의 구성) 15인 이내로 하되, 유아교육전문가 3인, 보육시설장대표 2인, 보육시설교사 2인, 해당상임위원회 시의원 3인, 시민단체 3인, 관계공무원 등으로 정한다. |
| (신설) |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 제4조(회의의 역할 등) (생략) | 제5조(회의의 역할 등) (현행과 같음) |
| 제5조(위원회 수당) (생략) | 제6조(위원회 수당) (현행과 같음) |
| 제6조(위탁운영) (생략) | 제7조(위탁운영) (현행과 같음) |
| 제7조(규칙) (생략) | 제8조(규칙) (현행과 같음) |

□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보육위원회) ①영유아의 보육에 관한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중앙보육위원회를 두고,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방보육위원회를 둔다.[개정 97. 12. 13 법 5454, 97. 12. 24]

②보육위원회는 복지 및 보육교육전문가, 보육시설종사자대표, 보호자대표 또는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3조(위원회의 기능) ①중앙보육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영유아보육사업의 기본방향 및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2. 영유아보육사업의 조사·연구
3. 영유아보육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개발보급
4. 기타 영유아보육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시·도에 두는 지방보육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영유아보육사업의 기본방향 및 정책에 따른 당해 시·도의 시행계획의 수립
2. 기타 영유아보육에 관하여 시·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시·군·구에 두는 지방보육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영유아보육사업의 기본방향 및 정책과 시·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당해 시·군·구의 시행계획의 수립
2.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3. 보육시설 입소대상 연령의 연장에 관한 사항
4. 보육시설에서의 비용수납에 관한 사항
5. 기타 영유아보육에 관하여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의 임기) 각 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